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3. 6. 13.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170
----------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복진경 의원 대표발의(10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3.)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대표발의자 복진경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구매 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지역업체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시책 추진 책무(안 제4조)
- 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및 공개(안 제5조)
-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 등(안 제6조)
-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적에 대한 표창 근거(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등

-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조례안 예고 : 5일 이상 추진(2023.6.2.~6.12.)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본 조례안은 강남구 구의회, 본청, 직속기관(보건소), 하부행정기관(22개 동) 및 재단과 공단 등의 공공기관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물품 및 용역, 공사 등을 구매촉진 하도록 하는 조례안이므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sup>1)</sup>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sup>2)</sup>에 근거한 지역 업체들의 매출증대를 기대하는 것임. 따라서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자문위원회나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의 비용 발생은 크게 해당되지 않을 것임.

□ 현재 경기도 고양시 등 전국 5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및 시행하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있으며, 유사 조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등 전국 70개 지자체에서 제정 및 시행되고 있음

순번	지역명	조례명	구분	시행일자
1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	2020.10.22.
2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	2020.6.25.
3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	2021.9.16.
4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	2023.3.9.
5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	2022.12.22.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본 조례안과 동일 제명으로 조사되는 조례는 5개 자치구 조례이며, 타 3개 자치구와의 조례 구성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강남구(안)		관악구 조례		영등포구 조례		동작구 조례	
조문	내용	조문	내용	조문	내용	조문	내용
1	목적	1	목적	1	목적	1	목적
2	정의	2	정의	2	정의	2	정의
3	다른조례와의 관계	3	적용범위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구매촉진	4	적용대상기관	4	구매촉진	4	구매촉진
5	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5	구매촉진	5	정보의 제공	5	정보의 제공
6	지역상품 우선구매	6	업체정보의 제공	6	지역상품 우선구매	6	지역상품 우선구매
7	표창	7	지역상품 우선구매	7	표창	7	표창
8	시행규칙	8	포상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부칙	9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10	협의회 기능				
		부칙	부칙				

□ 본 조례안에서 주목할 것은 안 제5조(지역업체 정보의 제공)와 안 제6조 (지역상품 우선구매)로 이 조례가 의결되어 시행된다면, 이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가 정기 및 수시로 관련 정보를 최신화하여 전 공공기관이 쉽게 알 수

있게 해야 할 것임.

-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sup>3)</sup>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강남구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 강남구 공공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지역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훈시적 성격의 기본적 조례라 할 것이며,
- 지역업체 구매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내부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임. 이 조례는 향후 강남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는 강남구 본청 등 산하기관까지의 내부적 규범이 될 것이기에 내부 규칙이 아닌 조례로 시행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끝.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구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자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정보, 중소기업자의 제품의 생산·제공능력 및 계약실적 등에 대한 정보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발주 및 입찰과 낙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 및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자체 보유 정보망과 구매정보망과의 연계·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에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2. 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 (복진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
----------	-----

발의연월일: 2023. 6. 1.

발의자:  
복진경·안지연·강을석·  
노애자·이동호·손민기·  
전인수·우종혁·한운수·  
박다미 의원(이상10인)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구매 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지역업체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시책 추진 책무(안 제4조)
- 다. 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및 공개(안 제5조)
- 라.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 등(안 제6조)
- 마.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적에 대한 표창 근거 (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하부 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2. “지역업체”란 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매촉진)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지역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강남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구에서 물품·용역·서비스 등의 제조·구매,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관내 공공기관·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4호, 2022. 11. 15., 타법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